

목 차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미국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로 인한 주(州)별 건강보험 적용 범위 변화 1
2.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의 금융회사 경영진 보수 내용 공개 및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기준 제안 4
3.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와 독일 보험회사의 준수 동향 8
4. 일본, 차매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11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잦은 자연재해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 보험료 인상 15
2. 호주, '차량정보 공유제도(Motor Vehicle Information Scheme; MVIS)' 시행 18
3. 독일, Zurich 및 AXA 생명보험의 런오프(Run-off) 계약이전 20
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취업불능보험 최근 상품 개발 현황 23
5. 중국 녹색보험 동향 27
6. 신재생에너지차 판매 급증 이후, 중국 보험산업에 불어오는 변화 30

[특집] 해외 보험산업의 고령화 대응: 미국편 33

I

해외 보험산업 제도 현황

1. 미국 대법원의 낙태 관련 판결로 인한 주(州)별 건강보험 적용 범위 변화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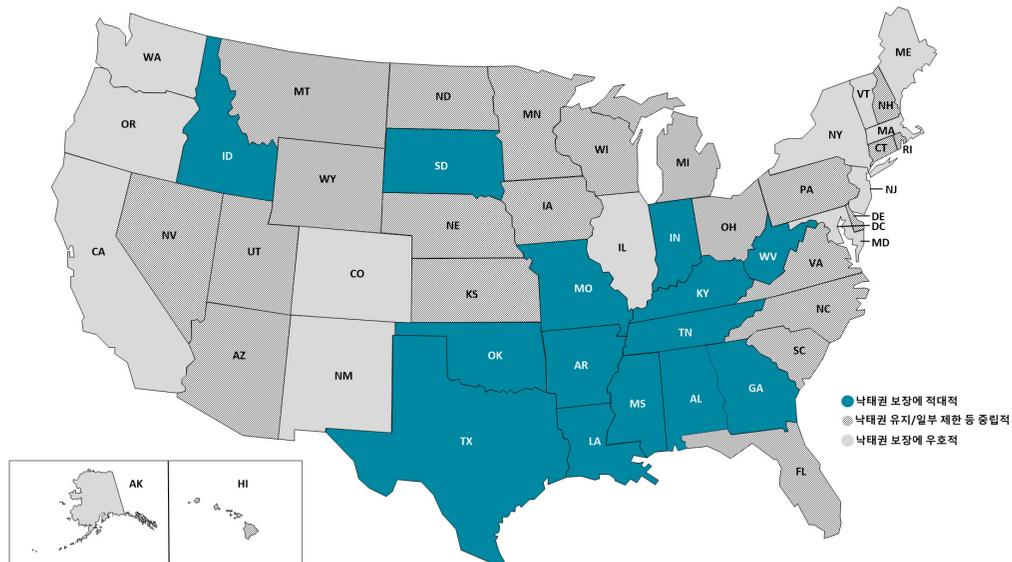
2022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인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서 존중한 1973년의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해 미국 주요도시에서는 격렬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고 있음. 동 판결로 인해 낙태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주(州)별로 상이하게 변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가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중 하나로 '낙태할 권리'를 법으로서 존중한 1973년의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함
 - 1973년의 대법원 판결은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¹⁾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판결로 이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 법률들이 폐지되었음
 -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미시시피 주(州)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49년 만에 뒤집으며 각 주가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자유로워짐
 - 이미 13개 주에서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낙태를 자동으로 불법화하는 트리거 법(Trigger law)을 통과시킴
- 대법원 판결 직후 정치권의 거센 반발은 물론 미국 주요 도시에서 찬반 시위가 벌어졌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해당 사안을 2022년 11월 중간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규정하겠다는 뜻을 밝힘(그림 1) 참조)

1) 당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할 때에만 낙태가 허용되었던 텍사스에 거주하던 비혼 여성 '로'는 성폭력을 당해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텍사스 법이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소송하였으며 이에 연방대법원은 원고승소판결을 내렸음

-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등 낙태권 보장에 우호적인 주(州)에서는 보험회사가 비용 부담 없이 낙태 시술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낙태 시술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음²⁾
 - 뉴욕 주는 낙태 접근성 증대를 위해 2,500만 달러, 낙태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를 위해 1,000만 달러를 예산으로 배정했으며, 워싱턴 주는 낙태 시술 클리닉을 위한 긴급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투입할 것을 발표함
- 또한 일부 주에서는 연방법에 관계없이 주(州) 헌법에 낙태할 권리를 명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으며, 각 주의 보험국은 보험 회사가 낙태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낙태 보장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을 상기하는 보도 자료를 내고 있음
-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여성의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된 것이라고 유감을 표하며,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하는 성명서를 발표함³⁾

〈그림 1〉 미국 각 주(州)별 낙태권 보장/금지에 대한 정책 방향 차이



자료: Guttmacher Institute(2022. 8. 12), "Interactive Map: US Abortion Policies and Access After Roe"

- 이에 아마존, 디즈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들은 직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으로 낙태 시술을 보장할 것이며, 낙태 시술을 위한 직원 여행 경비를 제공하기 위한 혜택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⁴⁾

2) CAP(2022. 7), "Expanding Access and Protections in States Where Abortion is Legal"

3) The White House(2022. 7), "FACT SHEET: President Biden to Sign Executive Order Protecting Access to Reproductive Health Care Services"

4) CBS News(2022. 7), "These companies are paying for abortion travel"

- 아마존 등 몇몇 기업들은 직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100마일 이내에 낙태 시술 제공자가 없을 경우 동 시술을 받기 위한 여행 및 숙박비용으로 최대 4,000달러를 지원하는 의료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함
- 대법원 판결 이전에도 낙태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주(州)·보험 플랜별로 상이했으나 동 판결로 낙태권 보장에 적대적인 주가 낙태 제한 법률을 강화하여 민간 건강보험회사가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저소득층의 낙태가 더욱 제한될 우려가 있음
-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임신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임신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낙태에 관한 연방 지출을 허용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위한 미국의 국가 건강보험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Medicaid)는 낙태 시술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임
 - 대법원 판결 이전 기준으로 33개 주와 DC가 동 연방법의 제한에 따랐으며, 16개 주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주(州) 기금을 사용하여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낙태를 보장하였고, 사우스다코타 주에서는 25년간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낙태도 보장하지 않았음
 - 텍사스에서는 태아의 심장 활동이 감지된 후(보통 임신 6주 정도)의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인 ‘Heartbeat Act’가 새로 발효돼 낙태 시술을 보장하던 보험회사가 더 이상 동 시술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⁵⁾
 -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 플랜으로도 낙태 시술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메디케이드 자격(저소득층) 상한선에 있는 3인 가족을 가정했을 때, 낙태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 소득의 1/3 가량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클 수 있음⁶⁾
 - 10주차 태아의 낙태 비용은 평균 약 500달러이며, 3인 가족의 메디케이드 자격 상한선은 한 달 평균 소득 기준 약 1,560달러임⁷⁾
- 한편, 일부 주에서는 낙태 시술뿐 아니라 피임약의 보험 적용 범위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이것이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미국 보건복지부는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ACA(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보험 플랜이 무료 피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발표함⁸⁾

5) CNN(2022. 6), “How the Supreme Court ruling could affect insurance coverage for abortions”

6) Guttmacher policy review(2017), “In Real Life: Federal Restrictions on Abortion Coverage and the Women They Impact”, volume 20, Guttmacher Institute

7) 낙태 비용은 주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며, 메디케이드 자격은 연방법의 제한에 따라 추가적인 보장을 지원하지 않는 주(州)를 기준으로 산출한 값임

8) Reuters(2022. 7), “U.S. says insurers must still cover birth control after Supreme Court abortion ruling”

2.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⁹⁾)의 금융회사 경영진 보수 내용 공개 및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기준 제안¹⁰⁾

요 약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은 금융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에 기반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건전성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진의 보수 내용 공개에 관한 기준과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기준에 관해 제안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함

- 2022년 7월 호주 건전성감독청(APRA)은 보험회사를 비롯한 감독당국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영진의 보수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기준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발표함
 - 금융기관 경영진에 관한 보수 규정은 2021년 제정된 Prudential Standard CPS 511 Remuneration (이하, 'CPS 511'라 함) 등에서 마련되었으나 이번 보고서는 기존 규정을 일부 개선하고 호주 건전성 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음
 - 경영진의 보수 내용 공개에 관한 규정은 Corporation Act,¹¹⁾ SIS Act¹²⁾ 등에서도 논의되었으나 이는 호주 건전성감독청의 규제를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해당되지 않음
 - 호주 건전성감독청은 경영진의 보수 내용 공개와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 금융기관의 경영위험 관리를 돕고 보수 기준 설정에 있어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보수 내용이 공개되면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재무 및 비재무적 위험 요소를 통제할 수 있고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건전성을 높일 수 있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음

- 보고서 제안에 따르면 해당 금융기관은 지배구조, 보수내용 설계, 경영과 보수 내용에 관한 결과 관리(consequence management)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
 - 보수는 경영성과와 위험정도와 연동되어야 하며 비재무적 요소(예: 위험관리 등)가 변동성과급에 미치는 영향도 공개되어야 함
 - 이 같은 제안은 국제기준을 제시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¹³⁾)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¹⁴⁾) 등

9)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10) <https://www.apra.gov.au/news-and-publications/apra-strengthens-transparency-on-remuneration-and-bank-dis-closures> 및 <https://www.apra.gov.au/remuneration-requirements-for-all-apra-regulated-entities>

11) Corporation Act는 2001년 시행된 법안으로 호주에서 회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기본틀을 규정함

12) SIS Act(Superannuation Industry Supervision Act)는 1993년 시행된 법안으로 호주 퇴직연금 산업을 감독하는 규정임

의 자료를 참고하여 만든 내용임

○ 해당 금융기관이 공개해야 하는 보수 내용은 기업규모 및 보수규정의 복잡성 정도와 비례하며 기업 규모가 크고 보수규정이 복잡할수록 요구되는 정보의 양이 많음

- 대규모 금융기관은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가중치 설정 방식, 주요 경영진 혹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예: 리스크 관리 담당)가 받는 변동성과급 및 이연지급(Deferrals)에 대한 정량적 정보를 공개해야 함
- 소규모 금융기관은 보수 설계의 기본틀과 지배구조에 관한 간소화된 정성적 정보만이 요구됨
- 변동성과급이 없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수가 적다거나 보수규정이 단순한 경우는 요구되는 정보가 적음

〈표 1〉 보수 내용 공개 기준 제안에 관한 내용 요약

분류	주요 금융기관(SFI ¹⁵)	주요 금융기관 외(Non-SFI)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감독에 대한 내용 요약 • 보수의 기본틀 최신 검토 이후 주요 내용과 관련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감독에 대한 내용 요약
보수내용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의 기본틀 설계에 관한 주요 특징 • 비재무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 변동성과급에 대한 비율을 포함한 비재무적 요소에 대한 가중치 적용 방식 •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변동성과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의 기본틀 설계에 관한 주요 특징
이연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지급 및 베스팅 권리(Vesting policy¹⁶)에 관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연지급 및 베스팅 권리에 관한 내용
경영과 보수내용에 관한 결과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수 조정 장치(Adjustment tools) 및 위험 관리 결과가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 • 중대한 위반 또는 위법 행위 시 이 같은 내용이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한 위반 또는 위법 행위 시 이 같은 내용이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
정량적 보수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으로서의 CEO와 코호트(Cohort) 기준에서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다음의 보수 내용을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보수 및 변동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요건 없음

13) Financial Stability Board

14) Basel Committee for Banking Supervision

15) 주요 금융기관(Significant Financial Institutions)은 CPS 511에 정의되어 있음

16)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현재 또는 미래에 지불할 급여, 자산 혹은 기타 혜택을 의미함

〈표 1〉 계속

분류	주요 금융기관(SFI)	주요 금융기관 외(Non-SFI)
정량적 보수 정보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 보너스(Guaranteed bonuses), 입사·특별금(Sign-on¹⁷) 혹은 퇴직급여(Severance payment¹⁸)와 같은 특별 지급금 - 각 회계연도에 대한 이연지급 및 조정(Adjustment) 급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공개 요건 없음

자료: APRA(2022. 7. 6), "Remuneration disclosure and reporting requirements", p. 9

○ 해당 금융기관은 보수에 관한 내용을 감독당국인 호주 건전성감독청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범위에서 정성적·정량적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보수 결정에 관한 지배구조) 해당 금융기관은 이사회 감독 내용, 위험요소를 반영한 보수 규정 승인에 관한 상세 내용 및 보수와 관련된 근거자료 등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변동성과급 설계) 변동성과급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변동성과급 구성 내용, 변동성과급 구성 요소 적용기간, 변동성과급 대상자 수, 변동성과급 형태(forms) 등에 관한 자료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특정 역할 수행자)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은 이들의 직책, 성과, 위험 및 수행능력 평가, 고정보수액 등에 관한 자료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함
 - 특정 역할 수행자에게 변동성과급 지급 시 이들 금융기관은 비재무적 요소의 가중치 정도, 변동성과급 목표와 상한액, 이연지급 등을 고려한 실제 변동성과급 등의 자료도 제공해야 함

○ 호주 건전성감독청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수 내용에 관한 정보를 보고 받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보수, 변동성과급, 총 보수액 등에 관한 정량적 통계치를 작성하여 공개할 예정임

- 감독당국이 공개하는 자료는 금융기관 경영진의 고정보수, 변동성과급, 총 보수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는 CEO 개인에 대한 보수 내용뿐만 아니라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의 코호트별 자료도 포함함
 - (고정보수) 감독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규 근무 직원 수, 고정보수액 총액, 고정보수 연간 평균상승률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
 - (변동성과급) 감독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정규 근무 직원 중 변동성과급 대상자 수, 변동성과급 지급 수혜자 수, 변동성과급 총액과 이연지급액 비중, 변동성과급의 전년 대비 상승률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
 - (총 보수액) 감독당국은 해당 금융기관의 고정보수와 변동성과급을 합한 총 보수액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임

17) 신규 입사 직원에게 일회성으로 부여하는 급여임

18)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임

- 감독당국은 이 밖에도 CEO, 주요 경영진 및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담당자에 대한 이연지급 및 미지급 보수액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계획임
- 호주 건전성감독청은 2022년 10월 7일까지 제안된 연구보고서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지을 계획임

3. 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와 독일 보험회사의 준수 동향

요 약

2019년 유럽연합은 EU 역대 금융기관이 투자 및 상품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을 도입하였으며 2023년부터 법적 구속력이 존재할 예정이다. 그러나 독일보험회사는 SFDR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실행력 제고가 요구되는 실정임

- 2019년 유럽연합은 EU 역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 및 상품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를 도입함¹⁹⁾
 - SFDR은 EU 지속가능금융 행동계획(Sustainable Finance Action Plan)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하고 그린워싱 방지 및 지속가능투자로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시행됨
 - SFDR에 따라 2021년 3월 1단계 시행 후 참조기간(Reference period)을 거쳐 2023년 1월 세부 이행 규칙(Regulatory Technical Standard; RTS)²⁰⁾을 담은 2단계가 시행될 예정임
 - 이행 1단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나 이행 2단계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는 법적인 구속력이 존재함
 - SFDR의 체계는 금융회사 단위(Entity-level)와 금융상품 단위(Product-level)의 공시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²¹⁾
 - (금융회사 단위) 금융기관은 자사의 자산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s)을 미치는 18개의 지표²²⁾를 담은 정량적 공시와 PAIs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 등을 포괄하는 정성적 공시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함
 - (금융상품 단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금융상품이 SFDR 8조 및 9조²³⁾에 해당되는 경우 웹사이트, 계약 전 공시, 정기공시를 통해 동 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 및 목표 정보를 제공해야 함

19) EU(2019. 11. 27), REGULATION (EU) 2019/208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November 2019 on sustainability-related disclosures in the financial services sector

20) 세부이행규칙(RTS)은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PAIs)에 대해 규정함

21) EBA, EIOP, ESMA(2021), "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22) 동 지표는 기업(14개), 국가(2개), 부동산자산(2개)에 대한 투자로 분류되며 하위분류로 온실가스 배출, 생물다양성, 물, 폐기물, 사회 및 노동자, 환경, 사회, 화석연료, 에너지효율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음(표 2) 참고

23) SFDR 따라 금융상품은 ESG 리스크가 투자 결정 또는 수익과 관련이 없는 금융상품(제6조), 환경 또는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금융상품(제8조), 지속가능한 금융상품(제9조)로 분류됨

〈표 2〉 자산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PAIs)과 관련한 18가지 의무공시사항

투자 대상	지표 분류	적용 지표
기업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배출량 • 탄소발자국 • 투자 대상 회사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 • 화석연료 부문 익스포저 • 재생 불가 에너지 소비 및 생산 비율 • 고영향 기후부문별 에너지 소비 강도
	생물다양성	• 생물 다양성 민감 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물	• 오염수 방출
	폐기물	• 유해 폐기물 및 핵폐기물 비율
국가	환경	• 피투자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강도
	사회	• 사회적 위반 국가
부동산자산	화석연료	• 부동산자산을 통한 화석연료(추출, 저장, 운송 및 제조 관련) 익스포저
	에너지효율	• 에너지 비효율적인 부동산자산 익스포저

주: 해당 자료는 ROBECO INSTITUTIONAL ASSET MANAGEMENT의 Principal Adverse Impact Statement를 참조하여 작성함

자료: EBA, EIOPA, ESMA(2021), "Final Report on draft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 제3조, 제4조 및 제5조는 보험회사 등 금융시장 참여자가 준수해야 하는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음²⁴⁾

- (SFDR 제3조) 금융시장 참여자는 자사의 투자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지속가능성 리스크를 해당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시키는 전략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 (SFDR 제4조) 금융시장 참여자는 자산운용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Principal Adverse Impacts; PAIs)과 그 지표와 관련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 금융시장 참여자는 PAIs와 관련 지표를 식별하고 그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전략에 대한 정보와, PAIs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야 함
- (SFDR 제5조) 금융시장 참여자는 금융상품이 가진 지속가능성 리스크의 정도와 동 상품 판매에 따른 성과체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함

24) EU(2018. 11. 27), VERORDNUNG (EU) 2019/2088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7. November 2019 über nachhaltigkeitsbezogene Offenlegungspflichten im Finanzdienstleistungssektor

○ 독일보험회사 평가기관 Assekurat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보험회사는 SFDR 및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지 않은 실정임이 드러남²⁵⁾

- Assekurata가 8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조사한 결과, 보험회사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등 환경(E)과 관련된 정보를 대부분 게시하였으나 사회(S) 및 거버넌스(G)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보험회사는 허위공시를 피하고자 SFDR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금융상품분류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이와 더불어 SFDR 제5조와 관련하여 실무에서 지속가능성에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보험상품 판매 간의 성과평가 체계 사이의 연관성 제고가 요구됨²⁶⁾

25) Assekurata(2021), "Die Transparenzverordnung – Erste Einblicke in Nachhaltigkeitsthemen bei Lebensversicherern"

26)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설계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이 가진 지속가능성 리스크와 성과체계는 관련이 없음을 공시하고 있음

4. 일본,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비한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개정

요 약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가족의 범위를 종전의 통상적인 가족에서 감독의무자 자격을 갖춘 가족으로 변경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로 인한 보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치매 가족 생활 배상책임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함

-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최고재판소 판결의 후속 조치로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는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2021년 6월에 개정하였음
- 일본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와 치매 고령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경찰청 조사(2021)에 의하면 75세 이상 운전면허 보유자 수가 380만 명('11) → 600만 명('20) → 760만 명('24)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²⁷⁾
 - 더욱이 내각부(2017)는 치매 고령자 수가 462만 명('12) → 631만 명('20) → 953만 명('25)으로 크게 증가하여 65세 이상 중에 치매 유병자 비율이 2025년에 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경찰청은 치매 고령자 증가가 치매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경찰청 조사(2021)에 의하면 운전면허 보유자 10만 명당 사망사고 건수가 70세부터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특히 80세 이후 30~60세 연령대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망사고를 일으킨 75세 이상 운전자의 인지기능 검사 결과 약 40%가 치매 또는 인지기능 저하 상태로 나타나 고령자의 인지기능 저하가 자동차 사망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됨²⁸⁾
- 일본에서는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할 경우 인지기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당국은 치매 가능성이 높고, 의사로부터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정지함
 - 따라서 동 검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치매 전단계(MCI) 등과 같이 인지기능이 저하된 운전자나 갱신 이후부터 인지기능 저하 또는 치매가 발병한 고령자가 계속 운전할 가능성이 있음

27) 警察庁(2021), “運轉免許通計”

28) 警察庁(2021), “高齢運転者交通事故防止対策に関する調査研究 調査研究報告書”

○ 일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민법상 심신상실자²⁹⁾로 인정될 경우 심신상실자를 대신하여 감독의무자인 가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³⁰⁾

- 일본 민법에서는 '정신적 장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이 없고',³¹⁾ '그 책임무능력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자(가족 등)가 제3자에게 가한 손해배상 한다'³²⁾고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가령 치매 운전자가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치매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지만, 감독의무자인 그 가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 일본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타인 신체에 피해를 입힐 경우 의무보험인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이하, '자배책보험'이라 함)과 임의가입인 자동차보험의 두 종류 보험에서 피해자를 보상함

- 자배책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타인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운전자가 치매로 인정되더라도 피해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손해를 보상함
- 자동차보험(대인배상책임보험, 대물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자동차 운행 중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나 차량 손해 등을 입힐 경우 타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함

○ 자동차 소유자는 치매 등 심신상실자의 자동차 운행 중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가입 시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할 수 있음

- 동 특약은 가족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가족이 운행 중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동 특약에서 보상하는 것이 가능함
- 가령 치매 부모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를 일으킬 경우 치매 부모를 대신하여 가족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동 특약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능함
- 다만, 일본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가족의 범위를 본인(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동거 자녀,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한정하고 있음³³⁾

○ 최근 법원은 치매 고령자 돌보는 감독의무자에 별거 중인 자녀를 제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일본 최고재판소(2016. 3. 1. 선고)³⁴⁾는 치매 고령자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인 원고의 손해배상책

29) 심신상실자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자임. 따라서 법률상 의사무능력자라고 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자로 취급하므로, 이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함(두산대백과)

30) 우리나라 민법은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제754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55조)'고 명시하고 있음

31) 일본 민법 제713조

32) 일본 민법 제 714조

33)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보험약관의 가족의 범위는 가입자와 양가 부모, 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가입자의 자녀(사실혼 자녀 포함), 가입자의 사위, 며느리 등임(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66966 판결)

34)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유사함

임 청구 소송에서 '치매 고령자와 별거 중인 자녀'의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감독의무자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함

- 즉, 최고 재판소는 감독의무자의 범위를 치매 고령자와 동거 유무, 기타 일상적인 접촉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가족으로 제한한다고 해석함
- 따라서 치매 고령자와 별거 중인 자녀는 감독의무자가 아니므로 치매 부모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타인 피해의 배상책임이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졌음

〈표 3〉 일본 치매 고령자 사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의 자동차보험약관의 가족의 범위

구분	개정 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대법원	개정 후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배우자	○	○ ¹⁾	○
동거 자녀	○	○ ¹⁾	○
별거 자녀	○(미혼 상태)	× ²⁾	× ²⁾

주: 1) 민법에 의거함

2) 단, 치매 부모를 실질적으로 돌보는 경우 별거 중인 자녀의 경우 가족의 범위에 포함됨(대법원이 실질적인 감독의무자 개념을 도입하였기 때문임)

○ 동 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되었음

- 주요 내용은 〈표 3〉과 같이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서 가족의 범위를 종전의 '본인(기명 피보험자), 배우자, 동거 자녀, 별거 중인 미혼 자녀'에서 개정 후 '배우자, 동거 자녀 등'으로 변경됨
- 다만, 배우자, 자녀라도 치매 고령자와 접촉 빈도가 낮아 자택에서 직접 돌보지 못하는 가족의 경우 감독의무자에서 제외됨
- 따라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치매 고령자를 실질적으로 돌보지 않은 상태에서 치매 고령자가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

○ 이러한 피해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손해보험회사들이 치매 고령자의 가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대비하기 위하여 치매 가족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특약상품으로 제공하기 시작함

- 동 상품은 치매 고령자의 민법상 감독의무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및 자녀 등이 가입하여 치매 고령자의 일상생활 가해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월 보험료는 1천 엔 이하 수준임
- 도쿄해상은 치매 고령자의 일상생활 사고의 배상책임보험을 보장하는 인지증안심플랜을 2021년에 개발하고, 미츠이스미토모화재와 손보재팬도 유사한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음³⁵⁾

35) NIKKEI NEWS(2021. 5. 15), “認知症 万一の事故に備え”

II

해외 보험산업 시장 현황

1. 미국, 잦은 자연재해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 보험료 인상

요 약

미국에서는 계속되는 보험 손실 증가로 인해 주택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 손실 증가 원인으로는 잦은 자연재해의 발생,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 수리 비용의 증가 등을 들 수 있음. 연방 기관은 자연재해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대 건축 법규 및 표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미국에서는 스테이트팜(State Farm), 올스테이트(Allstate) 등 대부분의 주택 보험회사가 최근 계속해서 주택 보험(Homeowners insurance)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음¹⁾
 - 2021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스테이트팜은 보험료를 12.1%, 올스테이트는 15.1% 인상했으며 주요 보험회사 대부분이 주택 보험료율을 두 자릿 수 이상 인상하였음²⁾
 - 2018년 이후 주택 보험료가 매년 인플레이션 이상으로 인상되는 추세에 있음(그림 1) 참조
- 주택 보험료 인상은 동 산업이 2017~2021년 5개년 간 100%에 가깝거나 이를 상회하는 합산 비율³⁾을 기록하면서 지속적인 손실을 입은 결과임
 - 주택 보험산업은 2017~2021년 기간 동안 2019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00%를 넘는 합산 비율을 기록함(그림 1) 참조
 - 2021년에는 상위 20개 주택 보험회사의 절반 이상이 100%를 초과하는 합산 비율을 기록함⁴⁾
 - 2021년 미국 최대 주택 보험회사인 스테이트팜의 합산 비율은 100.7%였으며, 상위 20개 보험회사 중 Tokio Marine Holdings는 가장 높은 144.4%의 합산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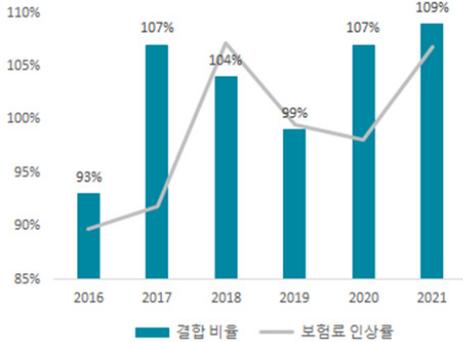
1) S&P Global(2022. 6. 22), "US homeowners industry posts big premium gains, loss ratio declines in Q1"

2) 2022년 1분기 기준 스테이트팜은 주택 보험시장 점유율 1위(18%)이며, 올스테이트는 2위(9%)임

3)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한 지표로, "손해율+손실 조정 비용 비율+사업지출 비율"로 이루어짐

4) S&P Global(2022. 5. 4), "Largest homeowners insurers' combined ratios above 100% in 2021"

〈그림 1〉 주택 보험산업의 합산 비율 및 보험료 인상률 추세



자료: APCIA(2022. 2), "Property Insurers Challenged by Skyrocketing Inflation and Natural Disasters"

〈그림 2〉 소비자물가지수와 집 교체 비용 물가지수 추이 비교



자료: III(2022. 2), "Trends and Insights: Drivers of home owners' insurance rate increases"

○ 미국의 주택 보험산업의 합산 비율 악화 원인으로는 ① 잦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의 증가, ②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주택 수리 비용의 증가, ③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 등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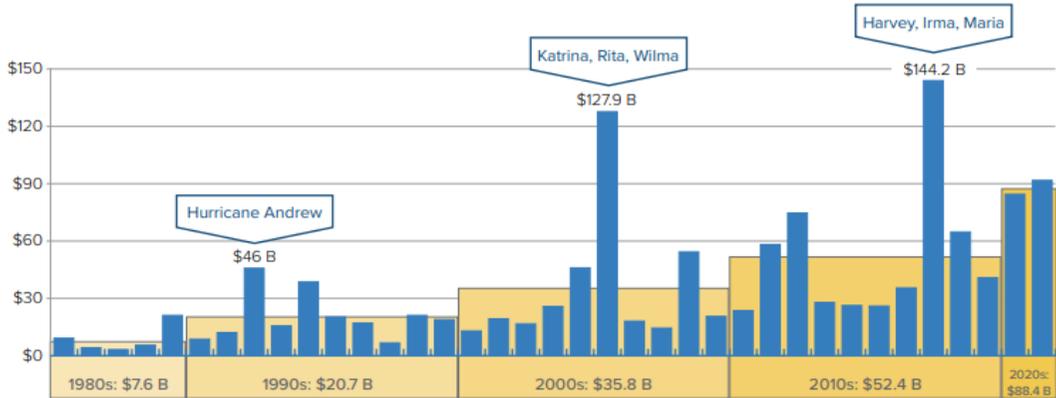
- 토네이도, 허리케인, 산불, 홍수 및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은 2021년에 92B달러에 달했고, 2017~2021년까지의 손실 총액은 400B달러 이상 발생함(그림 3) 참조
 - 연 평균 보험 손실은 1980년대 이후 700% 가까이 증가했음
 - 특히 2021년은 허리케인 Ida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그 총액은 지난 20년 동안의 연 평균 손실의 2배 이상이었음
- 공급망 제약 등으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자재값과 인건비가 급등하였음
 - 2019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건설자재 가격은 44.1% 올랐으며, 2021년 중반에 일부 목재의 가격은 400% 올랐음⁵⁾
 - 202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집 교체 비용 물가지수가 소비자물가지수를 훨씬 웃도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그림 2) 참조
- 미국의 보험 정보 연구소(Insurance Information Institute; III)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계속해서 머물기를 희망하는 것이 주택 보험산업 합산 비율 악화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음⁶⁾
 - 한 논문에 의하면, 미국의 약 30%에 해당하는 지역이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동 지역에 미국 건물의 60% 정도가 위치하고 있음⁷⁾

5) APCIA(2022. 2), "Property Insurers Challenged by Skyrocketing Inflation and Natural Disasters"

6) III(2022. 2), "Trends and Insights: Drivers of homeowners' insurance rate increases"

- 또한, 1968년 미국에서 통과된 전국 홍수 보험법(National Flood Insurance Act)에 의해 환경적으로 홍수에 취약한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게 위험에 비해 보험료가 낮게 책정된 홍수 보험이 제공되고 있어 동 법이 보험 손실에 기여한다는 분석도 있음⁸⁾

〈그림 3〉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 손실 추이



자료: III(2022. 2), "Trends and Insights: Drivers of homeowners' insurance rate increases"

- 자연재해의 빈도·강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 예상됨에 따라 연방 비상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및 기타 연방 기관은 자연재해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대 건축 법규와 표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음
 - 국립 건축 과학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는 동 법규 및 표준을 채택하면, 자연재해 대처에 1달러씩 지출할 때마다 재해 복구 비용을 11달러씩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함
 - 동 법규 및 표준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세한 건축 표준, 건물 건설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조건 등의 내용이 포함됨
 - 예를 들어, 지붕에 사용하는 못은 허리케인에 대해 내구성이 높다고 밝혀진 고리 모양의 못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등의 표준이 세워질 것으로 예상됨
 - FEMA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새로운 건물이 동 법규를 준수해 건설된다면, 2060년까지 600B달러 이상의 재해 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음⁹⁾
- 또한 미국 손해보험협회(APCIA)는 주택 보험 계약자에게 현재 계약이 주택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검토하고, 충분한 보장을 받기 위해 계약 갱신 때마다 보장 금액을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되는 옵션 등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7) Virginia Iglesias et al(2021. 6. 2), "Risky Development: Increasing Exposure to Natural Hazards in the United States"

8) The Journalist's Resource(2018. 6. 18), "Why people choose to stay in areas vulnerable to natural disasters"

9) FEMA(2020. 11), "Building Codes Save: A Nationwide Study"

2. 호주, ‘차량정보 공유제도(Motor Vehicle Information Scheme; MVIS)’ 시행¹⁰⁾

요 약

호주는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차량 정보를 자동차 제조사와 일부 협력업체가 폐쇄적으로 공유하여 시장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어 옴. 이에 호주 정부는 2022년 7월부터 소규모 독립 자동차 정비업체 및 관련 교육기관도 차량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차량 정보를 가진 업체의 정보 제공을 의무화 하는 제도인 ‘차량정보 공유제도’를 도입함

- 호주에서는 자동차 수리시장에서 차량정보를 일반적으로 자동차 제조사나 일부 협력업체가 폐쇄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정보 비대칭과 시장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어 옴
 -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CCC¹¹⁾)는 2017년 자동차 유통구조와 관련한 시장 조사에서 독립 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 유지관리(servicing)와 수리에 관한 기술정보 부족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을 발견함
 - 차량에 관한 주요 정보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일부 제휴된 협력업체가 제한적으로 공유하고 있음
 - 자동차 수리 시장은 기술집약적이고 전문적이라 일반지식의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와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가격의 적정성과 서비스 품질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함
 - 이에 소비자는 차량 유지관리 및 수리를 위해 추가 비용을 지출하거나 서비스 지연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했음
-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정보를 공유할 의무가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기에 호주에서도 이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미국은 자동차 유지관리와 수리에 관한 기술 정보가 소비자, 자동차 정비업계, 보험회사에 비교적 명확히 공개되어 있음¹²⁾
 - 미국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신차 판매 시 신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비업체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 직원도 차량 수리와 관련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음
- 호주 정부는 2022년 7월 ‘차량정보 공유제도(MVIS)’를 도입하고 호주 내 모든 자동차 정비업체와 등록된 교육기관(RTO¹³⁾)이 차량 유지관리 및 수리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조사

10) <https://www.accc.gov.au/focus-areas/motor-vehicle-information-scheme-mvis>

11)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12) 정영훈·허민영(2015), “자동차 수리서비스의 시장구조 분석 연구”, p. 124

와 같은 정보 제공업체의 차량정보 공유 의무를 강화함

- 자동차 제조업체를 포함한 정보 제공업체는 안전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하는 독립 자동차 정비업체 및 관련 교육기관이 자동차 점검, 유지관리, 수리에 관한 정보를 공정시장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공유할 정보는 차량 매뉴얼, 기술책자(Technical Service Bulletins¹⁴), 배선도, 자동차부품과 운할유 대한 기술 정보, 테스트 방법 등을 포함함
- 동 제도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제조된 승용차와 경량 상용차에 적용되지만 이륜·삼륜 차량, 농가용·건축용 차량, 중대형 상용차, 모터홈 및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음
-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정보 제공자가 차량 유지관리 및 수리에 관한 기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음

○ 호주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AASRA(Australian Automotive Service and Repair Authority)를 신설하였고 동 기관이 차량정보 공유제도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함

- AASRA는 자동차 제조사를 대상으로 차량정보 공유 시 책정 가격, 약관, 정보 공유 방법 등을 조사하고 안내함
- 또한 독립 자동차 정비업체와 교육기관이 차량정보 이용을 위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고 이들과 정보 제공자 간에 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중재자 또는 기술 전문가를 지정함
- 이 밖에도 동 기관은 규제 이슈나 제도 집행에 따른 문제 발생 시 호주 공정경쟁소비자위원회(ACCC)에 보고함

○ 제도를 통해 자동차 수리 시장에서 독립 자동차 정비업체와 소비자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산업 또한 이를 환영하는 입장임

- 독립 자동차 정비업체는 차량정보를 활용하여 자동차의 점검, 유지관리, 수리, 개조, 해체 등에 활용할 수 있음
- 소비자는 차량 수리 시 자동차 정비업체 선택권이 확대되고 가격, 품질, 신뢰성 등에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호주보험위원회(ICA¹⁵)는 차량 수리에 관한 정보가 자동차 제조사와 제조사의 협력업체 외에도 독립 자동차 정비업계에 공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 같은 제도 도입을 환영함

13) Registered Training Organizations

14) 차량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량 제조사가 차량의 수리 절차를 문서화한 자료를 의미함

15)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3. 독일, Zurich 및 AXA 생명보험의 런오프(Run-off) 계약이전

요 약

일부 독일 생명보험회사는 고금리 확정형 런오프(Run-off) 계약을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고 있음. 2021년까지 총 7개의 생명보험회사가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한 가운데, 2022년 Zurich, AXA 등 대형 보험회사 또한 계약이전에 합의함에 따라 생명보험 런오프 시장의 귀추가 주목됨

- 일부 독일 생명보험회사는 고금리 확정형 런오프(Run-off)¹⁶⁾ 계약을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이전함으로써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지급여력비율을 개선하고 있음¹⁷⁾
 - 계약이전이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회사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보험회사의 비핵심 사업부문의 양도나 사업매각, 리스크 경감을 위해 활용됨¹⁸⁾
 - 독일 생명보험 런오프 계약거래의 경우 원보험회사가 기존 계약을 런오프 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매도하는 것을 의미함
 - 현재 독일에는 Athora Holdings, Frankfurter Leben, Viridium Gruppe 등 세 개의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가 존재함
 -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는 동질의 속성을 가진 특정 생명보험 포트폴리오를 인수 및 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한 비용 절감으로 수익을 창출함
 - 이들은 일반 생명보험회사와 동일한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동일한 감독을 받지만, 신규계약 체결을 위한 모집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2021년까지 Basler, ARAG, Generali 생명보험 등 총 7개의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이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로 이전되었음
 - 2003년 만하임 생명보험(현 Entis Leben)을 시작으로 총 7개의 생명보험회사가 런오프 계약을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이전했으며 이는 전체 생명보험 산업의 약 4%를 차지함¹⁹⁾

16) 런오프(Run-off)란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계약을 인수하지 않고 기존 계약 갱신도 하지 않는 상태로, 기존 계약의 보험기간이 완료되지 않아 보험료 수입과 보험금 지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함

17) 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2020), "Run-offs bei Bestandsverträgen zur Altersvorsorge"

18) 지광운(2022),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따른 보험사 부채조정 방안의 법제화에 관한 연구」, 『보험법연구』

19) AssCompact(2021. 11. 17), "So geht es den Lebensversicherern im Run-off"

- 2018년 Generali는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 Viridium에 책임준비금 약 371억 유로 및 계약 건수 약 380만 건에 달하는 잔존계약(지분의 89.9%)을 매각하여 Generali Deutschland AG 및 Generali 그룹 전체의 지급여력비율을 각각 43%p, 2.6%p 상승시킴

〈표 1〉 독일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의 생명보험 계약인수 현황

기준	피인수회사	이전 연도	계약 건수
Athora Holdings	Delta Lloyd Lebensversicherung AG (현 Athora Lebensversicherung AG)	2010	244,251
Frankfurter Leben	Basler Leben AG (현 Frankfurter Lebensversicherung AG)	2015	92,282
	ARAG Lebensversicherung AG (현 Frankfurt Münchner Lebensversicherung AG)	2017	267,833
Viridium Gruppe	Protector Lebensversicherung AG (현 Entis Lebensversicherung AG)	2003	85,746
	Heidelberger Lebensversicherung AG	2014	363,536
	Skandia Lebensversicherung AG	2014	243,094
	Generali Lebensversicherung AG (현 Proxalto Lebensversicherung AG)	2018	3,845,565

주: 해당 자료는 2018년을 기준으로 함

자료: JDeutsches Institut für Altersvorsorge(2020), "Run-offs bei Bestandsverträgen zur Altersvorsorge"

○ 2022년에는 Zurich 생명보험, AXA 생명보험 등 대형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로의 계약이전을 결정하였으며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음

- Zurich는 책임준비금 약 200억 유로의 72만 건에 달하는 자회사 Zurich Deutscher Herold 생명보험의 런오프 계약을 Viridium Gruppe에 매도함²⁰⁾
 - Zurich 생명보험은 동 거래를 통해 변액보험, 생명 관련 리스크 상품(Biometrie-Produkt)²¹⁾ 및 퇴직연금 상품 등 신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급여력비율 약 8%를 개선할 것으로 예측됨
- AXA는 7월 책임준비금 약 140억 유로의 약 90만 개에 달하는 자회사 DBV-Winterthur 생명 및 연금보험 런오프 계약을 6억 6천만 유로를 받고 Athora Holdings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²²⁾

20) Handelsblatt(2022. 6. 24), "Zurich verkauft deutsche Leben-Altbestände an Viridium – Was das für den Markt bedeutet"

21) 생명 관련 리스크 상품(Biometrie-Produkt)란, 생명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으로 연금보험, 소득보상보험, 간병보험 등을 포괄함

22) AssCompact(2022. 7. 15), "AXA verkauft Teilbestand ihrer Lebensversicherungsverträge"

- AXA는 DBV-Winterthur 생명보험을 2006년에 인수하여 2013년 신계약 체결을 중단했으며, 계약 규모는 AXA 생명보험 전체 계약의 20%를 차지함
 - Zurich 생명보험과 AXA 생명보험은 Viridium Gruppe 및 Athora Holdings와 각각 런오프 계약이전에 합의하였지만, 실질적인 이전을 위해서는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가 필요함
- 런오프 계약이전의 마지막 단계는 연방 금융감독청(BaFin)의 허가로, 계약이전 허가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임²³⁾
- BaFin은 감독의 최우선 가치는 피보험자의 이익 보호로,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에 양도가 예정된 계약과 그 보험계약자가 받는 서비스는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생명보험 런오프 계약을 인수하는 런오프 전문보험회사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을 검증받아야 함
- 그러나 2021년 생명보험 런오프 전문보험회사가 관리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클레임이 전체 생명보험산업 클레임의 대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런오프 계약이전에 대한 시장의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함²⁴⁾
- 2021년 BaFin이 접수한 1,045건의 클레임 중 Viridium Gruppe가 인수한 Skandia, Heidelberger, Entis 생명보험이 각각 약 28%, 11%, 10%를 차지함
 - 이와 더불어 보험금 지급 지연을 이유로 Viridium Gruppe로 이전된 Generali 생명보험(현 Proxalto 생명보험)은 소비자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함²⁵⁾

23) Bafin(2014. 3. 4), "Run-off: Aufsicht über Versicherungsunternehmen, die Bestände abwickeln"

24) Versicherungsbote(2022. 5. 13). "Lebensversicherung: Run-off-Versicherer sammeln die meisten Beschwerden bei der BaFin"

25) Versicherungsbote(2022. 8. 8), "Generali-Altverträge: Proxalto-Kunden klagen über ausbleibende Zahlungen"

4.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취업불능보험 최근 상품 개발 현황

요 약

일본에서는 소득활동 중단에 대비한 생활비 보장 니즈가 확산함에 따라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 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취업불능보험상품의 판매가 2010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이후 최근 26개사가 판매하는 등 전 생명보험업계로 확산하고 있음

- 최근 일본에서는 소득활동 중단에 대비한 생활비 보장 니즈가 확산함에 따라 질병 등으로 인한 소득활동 중단 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취업불능보험의 상품개발이 확산하고 있음
 - 일본에서는 2019~2022년 동안 취업불능보험상품을 15개 생명보험회사가 개발하였음
 - 주요 개발 배경은 독신 가구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40~50대 이후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 지급 건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증가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에 대비한 개인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의 취업불능보험은 질병, 재해 등으로 장애를 입어 취업능력이 상실하게 될 경우 중단된 소득을 보충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이전 소득수준의 일정 비율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임
 - 동 보험은 취업능력 상실 시 소득중단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자가 준비하는 자율적인 경제적 수단으로 가계의 경제적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임
 - 종전에는 건강보험상품 등과 같이 질병 발생 시 진단 및 치료비 보장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소득 감소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소득감소 리스크에 직접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질병·상해로 인한 취업능력 상실 상태를 급부 지급요건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에서는 보험회사가 취업불능보험, 수입보험보험, 소득보상보험 등의 유사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취업불능보험은 가입자가 의학적으로 취업능력이 상실할 경우 약정한 기간에 생활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당시의 취업상태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 자영업자, 파트타이머는 물론이고, 연금생활자, 자산운용 생활자도 가입할 수 있음

- 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수입보장보험은 생활보장보험, 가계보장보험 등으로 판매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 사망 또는 고도장애 시 가족의 생활비 보장을 위해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사망보험의 한 종류이므로 전통적인 상품의 경우 사망이 급부지급의 요건임
- 반면,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소득보상보험은 취업능력 상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자가 입을 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가입 당시의 가입자 취업상태(근로자·자영업자)를 가입 요건으로 함

〈표 2〉 일본 보험회사 취업불능보험과 유사한 상품의 주요 특징 비교

구분	취업불능보험	수입보장보험	소득중단보험
분류	제3보험	사망보험의 일종	제3보험
취급회사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가입 요건	취업 여부 무관	취업 여부 무관	근로자·자영업자
지급 사유	질병·상해·장애·간병 등으로 취업능력 상실 상태	사망·고도장애·간병 등으로 취업능력 상실 상태	질병·상해 등으로 노동 취업능력 상실 상태
지급 방법	원칙적으로 월지급	월지급/일시금	일시금
면책 기간	60~180일	-	7일 정도
중복 보장	가능	가능	불가능

- 또한, 일본의 취업불능보험과 소득보상보험은 면책 기간과 보장 기간에서 차이가 있음
 - 취업불능보험은 면책기간이 60~180일로 기간이 다소 길고, 급부기간이 보험 만기까지 등 장기임
 - 반면, 소득보상보험은 면책기간이 7일 정도이고, 급부기간이 1~2년의 단기성 상품임
 - 급부 금액은 피보험자가 가입한 공보험제도에서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소득 상한으로 금액이 설계되며, 여러 개에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 조사(2021)에 의하면 생명보험회사의 취업불능보험 가구 가입률은 18.4%이며, 2018년 조사(12.0%) 대비 6.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²⁶⁾
 - 연령별로는 30~34세 34.6%, 35~39세 30.9%, 45~49세 28.7%, 40~44세·50~54세 26.3%의 순으로 높음
 - 가입자 직업별로는 정규직 25.0%, 자영업자 20.4%, 비정규직 12.5%의 순으로 높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취업불능보험상품은 2010년 처음 판매된 이후 전사로 판매가 확산되고 있음
 - 2022년 5월 말 기준으로 최근 4년간 신규 개발한 15개사를 포함하여 총 26개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고 있음²⁷⁾

26) 生命保険文化センター(2021), “2021年度 生命保険に関する全国実態調査”

- 2019년부터 판매를 시작한 생명보험회사는 니혼생명, 메이지야스다생명, 다이이치생명, 토쿄해상안심생명, Lifenet, AFLAC, 푸르덴셜, NN생명, 취리히생명 등임
- 최근 상품은 정부가 인정한 장애인, 간병등급 등을 통해 질병·간병 상태를 확인하는 등 공보험과 지급 요건을 연동하는 등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를 도입하고 있음
- 이에 가입자는 보험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상 장애등급, 간병보험제도상 요보호인정 등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 등급, 건강보험의 입원급여, 재직증명 등과 관련한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최근 생명보험회사들은 <표 3>과 같이 일반적으로 계속 입원과 재택요양시 급부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상품에 따라 신체장애, 정신질환, 고도장애, 비정상적인 임신·출산 시 급부를 보장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Lifenet 생명의 경우 입원·재택요양(5대 질병 발생 시)·장애(2등급 이상), 정신질환(2등급 이상), 비정상적 임신·출산 보장, 특정 질병에 의한 입원·수술 시 일시금 지급하는 등 전체 상품 중에서 지급 사유의 범위가 가장 넓은

<표 3>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취업불능보험 주요 개발 현황

회사명	판매 연도	주요 상품 특징
AFLAC	2022	직장 가입자 가입 대상, 입원·재택요양·정신질환 보장, 장기보장 옵션
푸르덴셜	2021	입원·재택요양·정신질환·고도장애·장애 2등급 이상 보장, 일시금 지급 옵션
취리히생명	2021	입원·재택요양·고도장애·장애 2등급 이상·정신질환·비정상적 임신·출산 시 보장, 단기·장기 급부 제공
니혼생명	2021	입원·정신질환·비정상적 임신·출산 입원 보장, 14일 이상 계속 입원할 경우 6개월 분 일시금 지급
NN생명	2021	입원·재택요양·고도장애·장애 3등급 이상 보장, 사망보장과 정신질환 보장 옵션 선택 가능
Lifenet	2021	입원·재택요양(5대 질병)·장애(2등급 이상), 정신질환(2등급 이상), 비정상적 임신·출산 보장, 특정 질병에 의한 입원·수술 시 일시금 지급, 면책기간(60·180일)
토쿄해상안심	2021	입원(5대 질병)·재택요양(5대 질병)·장애(3등급 이상), 간병(2등급 이상), 정신질환(1등급 이상) 보장, 입원·재택요양 시 2개월간 급부금을 지급
다이이치	2019	입원·재택요양·정신질환·비정상적 임신·출산 시 보장, 단기·장기 급부 제공, 단기 급부는 계속입원 14일의 경우 일시금(50% 보장) 지급, 장기상품은 매 6개월간 급부금 지급(총 10회 가능)
메이지야스다	2019	입원·재택요양·정신질환·비정상적 임신·출산 시 보장, 면책 30일, 1회당 12개월 지급, 합산 총 2회, 24개월분으로 제한

자료: 大沼八重子(2022)을 기초로 작성함

27) 大沼八重子(2022), “就業不能への備え”

- 다만,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들은 입원의 경우 5대 질병 발생 시로 한정하는 등 지급 사유를 제한하여 보장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도쿄해상안심생명은 모든 입원과 재택요양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5대 질병 발생 시로 입원과 재택요양으로 지급 사유를 제한하거나 장애나 간병, 정신질환의 경우 각각 장애 3등급 이상, 정신 장애 2등급 이상, 간병 1등급 이상 등으로 지급 사유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음

-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지급 사유에 따라 단기·장기 급부를 보장하거나 면책 기간을 두고 있음
 - 다이이치생명은 입원 또는 재택요양이 14일 이상 지속될 경우 기본 보장의 50% 단기 급부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6개월간 장기 급부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 또한, 메이지야스다생명, Lifenet의 경우 30·60·180일간의 면책기간을 두고 있음

5. 중국 녹색보험 동향²⁸⁾

요 약

중국은 녹색금융 구현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중국 정부가 2018년 환경오염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녹색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환경오염 책임보험 외 녹색교통, 기후, 녹색에너지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특히,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업·보험업 녹색금융 지침》을 발표함으로써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

- 중국은 녹색금융 구현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지속적으로 녹색보험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 중임
 - 녹색보험은 환경오염사고를 보장하는 의미와 녹색산업과 관련된 리스크를 보장하는 의미로 구분됨
 - 좁은 의미로는 환경오염 책임보험으로 불리며, 수질오염, 토지·대기오염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법에 의하여 보장하는 보험임
 - 넓은 의미로는 환경오염, 재난·기상 리스크를 보장하는 녹색보험 상품뿐 아니라 녹색에너지, 녹색교통, 녹색건축, 녹색기술 등의 영역에서 리스크를 보장하는 상품을 의미함
 - 2007년 환경오염 책임보험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래 지속적으로 녹색보험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녹색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 증가와 지속가능발전을 기대하고 있음

〈표 4〉 중국 녹색보험 체계 구축

시기	관련 문서	주요 내용
2007.12	《환경오염 책임보험 사업에 관한 지도 의견》	환경오염 책임보험 시범 사업 본격화, 녹색 보험 제도 구축 시작함
2013.01	《환경오염 강제책임보험 시범 사업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	‘중금속 관련 기업’ 등 고위험 업종 환경오염 강제책임보험 시행함
2016.08	《녹색금융 체제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	녹색보험의 발전을 위해 최고 수준의 설계를 제공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함
2018.05	《환경오염 강제책임보험 관리 방법(초안)》	환경오염 책임보험의 ‘강제성’에 대한 규정 마련 및 환경오염 의무 보험 제도를 규범화함
2019.05	《시장지향적 녹색기술 혁신 체제 건설에 관한 지도 의견》	녹색 제품과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지원함
2021.02	《녹색 저탄소 순환 발전 경제체제 구축 및 가속화에 관한 지도 의견》	녹색보험 발전을 강화하고, 보험료 조정 기구 역할을 강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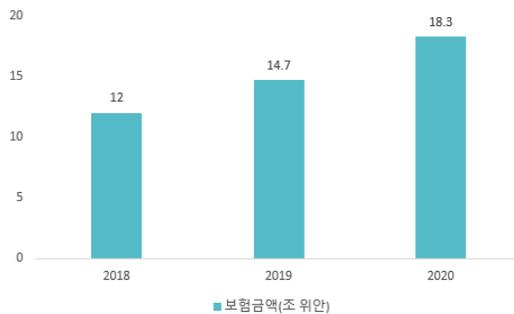
자료: KPMG(2021)

28) KPMG(2021. 9), “绿色金融大有可为”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 중국 정부가 2018년 환경오염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녹색보험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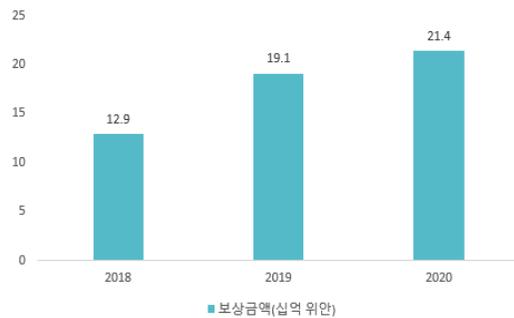
- 중국 보험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보험의 보험금액과 보상금액은 해마다 증가 중이며, 환경오염에 대한 보장도 확대되고 있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녹색보험(녹색에너지, 녹색교통, 녹색건축, 녹색기술, 재난, 기상, 녹색자원, 환경오염 등)의 보험금액은 총 45조 위안이고, 보상금액은 약 534억 위안임
 - 2020년 기준 녹색보험의 보험금액은 약 18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24.9% 증가하였고, 보상금액은 약 21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함
- 녹색보험 자산운용 잔액은 2018년 약 3,954억 위안에서 2020년 약 5,615억 위안으로 증가했고, 고속철도 건설, 청정에너지, 하수처리, 생태농업 등 분야에서 연평균 성장률은 19.2%임
- 환경오염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2018년 약 4조 위안에서 2020년 약 5조 위안으로 증가했으며, 연평균 성장률은 14.4%임
 - 녹색보험 상품 중 환경오염 책임보험은 환경 리스크 관리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녹색보험 상품이며, 에너지 절약 및 탄소배출 저감을 실천하고 있는 친환경 기업들의 리스크를 보장함

〈그림 4〉 2018~2020년 녹색보험 보험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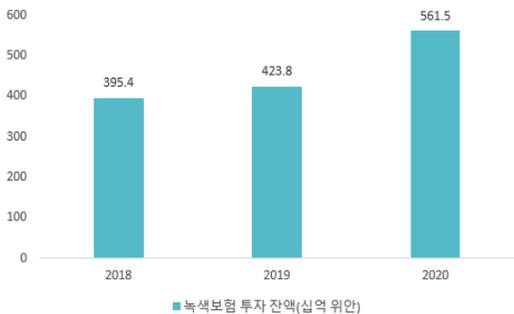
자료: 중국보험협회; KPMG(2021)

〈그림 5〉 2018~2020년 녹색보험 보상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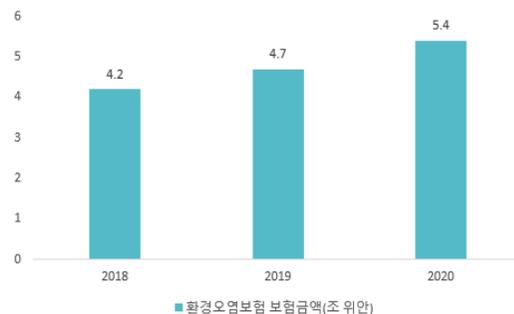
자료: 중국보험협회; KPMG(2021)

〈그림 6〉 2018~2020년 녹색보험 자산운용 잔액



자료: 중국보험협회; KPMG(2021)

〈그림 7〉 2018~2020년 환경오염 책임보험 보험금액



자료: 중국보험협회; KPMG(2021)

○ 환경오염 책임보험 외 녹색교통, 녹색건축, 기후, 녹색에너지와 관련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차 보험 연장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충전기·충전소 등 신재생에너지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보험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 중임
 -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녹색교통 보험의 총 보험금액은 6조 3,400억 위안으로, 2018년보다 3조 7,800억 위안이 증가함
- 2019년 4월 중국 인민재산보험회사가 최초로 녹색건축 보험을 출시했으며, 2020년 4월 중국 건축 에너지 절약 협회는 《녹색건축품질 성능보험 시범 방안》을 발표함
 -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녹색건축 보험의 총 보험금액은 1,017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218억 위안이 증가함
- 재난보험이 중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녹색보험 상품으로, 국무원은 2006년 《보험업 개혁 발전 및 농업 재난보험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재난보험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킴
 -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결합하여 재난 데이터베이스·재난 모델·리스크 관리 플랫폼을 구축했으며, 재난 지수 보험을 출시함
 -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재난·기상보험의 보험금액은 3,625억 위안으로 2018년 대비 803억 위안이 증가함
- 2018년 광저우 화두건설은행, 광저우 인민재산보험, 광저우 탄소 배출거래소가 공동으로 탄소배출권 담보 대출에 대한 보증보험을 최초로 출시하여, 기업이 자금 조달을 위해 탄소 배출권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특히, 최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녹색금융 발전을 촉진시키고, 탄소 배출량 피크 도달 및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은행업·보험업 녹색금융 지침(이하, '지침'이라 함)》을 발표함²⁹⁾

- 중국은 2020년 9월, 2030년 이전에 탄소피크(碳达峰)를 이루고, 2060년 이전에 탄소중립(碳中和)을 달성하겠다는 이중탄소(双碳)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지침》은 7장 36조로 구성되었으며, 녹색금융 정책의 지도적 성격을 강화하고, 녹색금융 정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금융 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함
- 《지침》에서는 보험회사가 친환경·저탄소 발전 분야에 대한 재원 투자 확대를 통해 녹색금융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해야 하고, 환경·사회·지배 구조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녹색금융 정책 및 ESG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함
- 《지침》을 통하여 보험회사의 녹색금융 조직관리 강화, 녹색금융 정책 제도 및 역량 구축, 투·융자 절차 관리, 내부 통제 관리 및 정보공개, 감독 관리 방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함

29) http://www.gov.cn/zhengce/zhengceku/2022-06/03/content_5693849.htm

6. 신재생에너지차 판매 급증 이후, 중국 보험산업에 불어오는 변화

요 약

2021년 중국보험협회는 신재생에너지차 판매 급증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전용 표준약관을 제정함. 신재생에너지차 판매가 급증하면서 중국 손해보험회사의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 비중과 온라인채널 판매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자동차기업의 자동차 보험 사업 확장은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중국보험협회는 신재생에너지차³⁰⁾ 판매 급증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전용 표준약관을 제정함³¹⁾
 - 한국처럼 중국의 자동차보험 제도는 크게 강제보험(책임보험) 및 상업보험(종합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전용 표준약관은 상업보험 표준약관에 해당함
 - 중국 손해보험회사는 상업보험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감독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회사 자체 상업보험 약관을 개발해 사용할 수도 있음
 - 강제보험의 경우 모든 손해보험회사는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보험약관을 그대로 사용해야 함
 - 중국보험협회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전용 표준약관은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해 차량 훼손, 배터리, 전동엔진, 전기제어시스템 고장, 충전기 고장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추가적으로 보상함
 - 중국의 내연기관차 자동차보험은 자연발화 및 외부 전락망 고장으로 인한 배터리, 전동엔진, 전기제어시스템 고장, 충전기 고장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중국보험협회는 신재생에너지차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및 보험금의 산정 기준을 모두 보조금 공제 후 금액으로 통일함
- 최근 중국 자동차보험 신규계약 원수보험료에서 신재생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신재생에너지차 판매 급증으로 확대되고 있음³²⁾
 - 2022년 상반기 신재생에너지차 판매 대수는 22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00.3% 증가하였으며, 2022년 상반기까지 신재생에너지차 누적 판매 대수는 1,000만 대를 돌파함

30) 중국에서 판매되는 신에너지차에는 순수 전기차(P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수소 전기차(FCEV), 기타 신재생에너지차 등이 있음

31) 이소양(2022. 2. 21), 「중국 신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제도변화와 영향」,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32) 国信证券(2022. 7), “重视新能源车险带来的行业景气度”

- 2022 상반기 전체 신차 판매 대수에서 신재생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5.8%에서 19.9% 까지 상승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신규계약에서 신재생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중국태평양상해보험회사는 2022년 1~5월 자사 자동차보험 신규계약 원수보험료에서 신재생에너지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48.3%를 기록함
- 중국재보험회사는 신재생에너지차가 전체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가 2021년 300억 위안에서 2035년 2,000억 위안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 전용 표준약관 제정으로 내연기관차 자동차보험에 비해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의 온라인채널 판매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³³⁾

- 중국 감독당국은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 확대에 따른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의 사업비를 낮추고 전용 판매 플랫폼을 개설함
 - 중국 감독당국은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상승 압력을 상쇄하기 위해 사업비율 한도를 내연기관차 자동차보험의 사업비율 한도인 25%에서 15%로 하향 조정함
 - 또한 중국상해보험거래소를 통해 상품조회, 보험가입, 증권관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판매 플랫폼을 개설함
- 내연기관차 자동차보험과 비교할 때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중국 손해보험회사들은 사업비 제약으로 오프라인채널을 확대하기 어려워 중국상해보험거래소의 전용 판매 플랫폼을 포함한 온라인채널 판매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됨
 - 현재 신재생에너지차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12개 중국 손해보험회사는 오프라인채널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를 지출하기 위해 모두 중국상해보험거래소의 전용 판매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차의 직접 판매방식이 확산하면서 자동차보험 사업에 진입하는 중국 자동차기업은 증가하고 있음³⁴⁾

- 과거 내연기관차 생산 기업과 달리 중국 신재생에너지차 생산 기업은 고객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자동차매장을 직접 개설해 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을 직접 판매하고 있음
 - 중국 내연기관차 생산 기업은 주로 제3자 판매조직인 4S 매장³⁵⁾을 통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며, 4S 매점은 신차 자동차보험 판매에 있어서 매우 유력한 지위를 보유하고 있음

33) 华夏时报(2022. 8), “新能源车险商业逻辑正在重构 直销模式或实现去中介化”

34) 新华网(2022. 3), “新能源车企纷纷推车险”

35) 중국의 4S 매장은 자동차판매(Sale), 부품(Sparepart), 정비(Service), 점검(Survey) 등 자동차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딜러점이며, 대부분 딜러점은 완성차 기업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 판매채널에 진입한 중국 자동차기업은 전통 자동차기업인 제일자동차, 광동자동차, 상해자동차, 길리자동차, 비야디자동차에서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신생 자동차기업인 니오자동차, 리오토자동차, 샤오펑자동차까지 확대됨
 - 대형 자동차기업인 제일자동차, 광동자동차, 상해자동차, 길리자동차, 비야디자동차는 각각 손해보험 회사를 보유·인수하는 반면 신생 자동차기업인 니오, 리오토, 샤오펑은 각각 보험중개회사나 보험대리회사를 인수함

- 자동차보험 판매단계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상품개발, 손해사정 단계에도 신재생에너지차 생산 기업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차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차량 소유자는 운행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하며 자동차 회사는 차량에 설치된 센서를 비롯한 전장부품을 통해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 신재생에너지차 기반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동차보험 사업에 진출한 중국 신재생에너지차 생산기업은 자율주행차보험 개발에 있어서 일반 보험회사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임
 - 이는 일반 보험회사와 달리 신재생에너지차 생산기업이 수집한 막대한 운행 데이터를 자율주행차보험 개발과 손해사정에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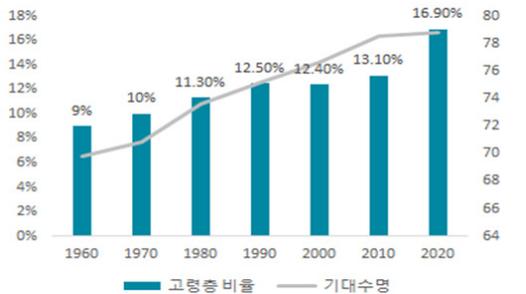
요 약

미국은 현재 낮은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노동가능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일본, 유럽 주요국에 비해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베이비 붐 세대가 모두 고령자가 되는 2030년 이후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 또는 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간병인의 처우를 개선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최근 노인법을 개정하였음

1. 미국의 고령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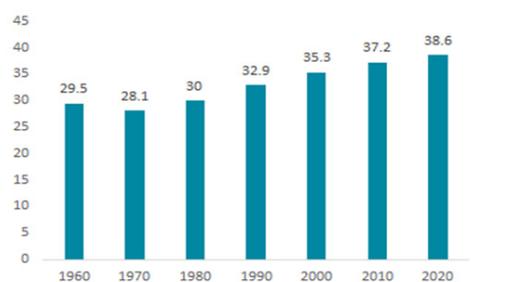
- 미국은 고령층(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16.9%로 2030년 경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중위 연령은 39세로 일본, 유럽의 국가 등에 비해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미국의 총 인구는 약 3억 2,400만 명, 고령층 인구는 약 5,300만 명으로 고령층이 전체의 16.9%의 비중을 차지함
 - 미국은 고령층 비율이 1960년 전체 인구의 9% 수준에서 1980년 11%로 증가하다가 2015년 15%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섰으며, 2030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
 - 그러나 중위 연령이 50세를 넘긴 일본이나 유럽의 주요 국가와 달리 미국은 중위 연령이 39세로 비교적 젊은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중위 연령 증가 추세 또한 완만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

〈그림 1〉 미국의 고령층 비율 및 기대수명 (단위: %, 세)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그림 2〉 미국의 중위 연령값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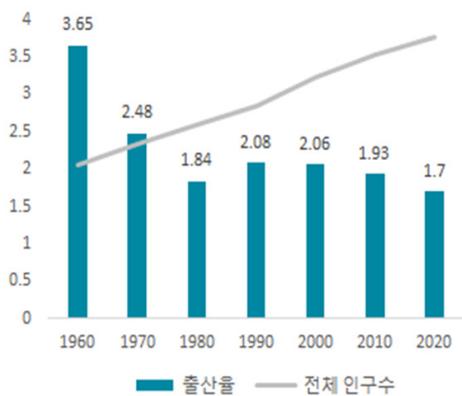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 현재 미국은 낮아지는 출산율에 반해 전체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고령화에 따라 노인 부양비 부담 또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타 선진국에 비해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가능 인구가 꾸준히 미국으로 이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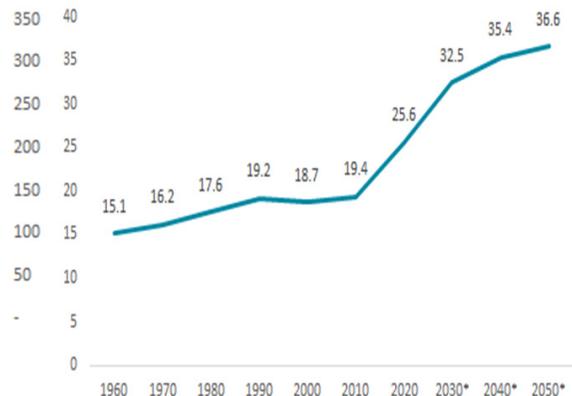
- 미국의 출산율은 1990년 2.08에서 2020년 1.7로 감소하고 있는데, 인종별로 출산율 차이를 보이는 것이 특징임(〈그림 3〉 참조)
 - 2020년 기준 하와이 및 태평양 제도의 원주민 여성의 출산율이 약 2.14로 가장 높고, 히스패닉이 1.88, 히스패닉을 제외한 흑인이 1.71, 백인이 1.55이고, 아시아인이 1.39로 미국 내 인종별 출산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¹⁾
- 미국의 노인 부양비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한국(21.7)보다 소폭 높은 25.6을 기록하고 있으나, 2050년에 예상되는 한국의 노인 부양비는 77.6인 것에 비해 미국의 2050년 노인 부양비 예측치는 36.6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그 추세가 비교적 느리다고 할 수 있음(〈그림 4〉 참조)
 - 노인 부양비는 (당해 연도 65세 이상 인구 ÷ 당해 연도 15~64세 인구) × 100으로 계산함
- 미국으로의 이민규모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며 이민자의 대부분이 노동가능 인구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고 있으나, 젊은 이민인구 유입이 정체되는 시점에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미국의 출산율 및 전체 인구 수
(단위: 명, 백만 명)



자료: 미국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

〈그림 4〉 미국의 노인 부양비



주: *는 예측치를 나타냄

자료: KOSIS,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OECD)”

1) Statista(2022. 2), “Total fertility rate in the United States in 2020, by ethnicity of mother”

2.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와 의료 비용 문제

- 미국 고령화 현상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고령화 문제인데, 미국 베이비 붐 세대는 1946~1964년 출생자들로 그 규모가 7,800만 명에 달해 이들로 인해 2030년 이후 미국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11년부터 2030년까지 20년간 매일 만 명 이상이 65세에 진입하고 있으며, 미국의 고령 인구는 2060년에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그 규모는 약 1억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령화 진행에 따라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해 미국의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은 2016년에 15%를 넘었으며, 2027년에는 19.4%(약 6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간병인, 간호사 등의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 2025년을 기준으로 약 50만 명의 간병인, 10만 명의 간호 보조사, 2만 9천 명의 간호사가 부족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음
 - 이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가정에서의 돌봄 서비스를 장려하고, 원격 의료, 음성 비서 등의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음

3. 미국 정부의 인구고령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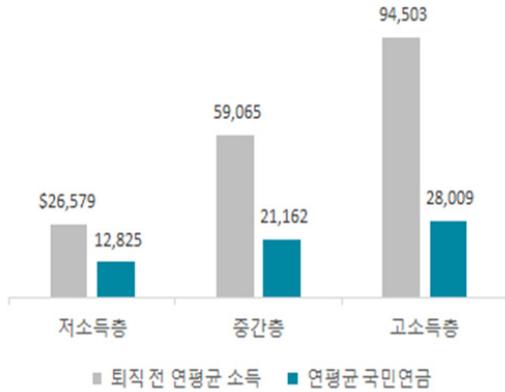
- 미국 고령화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적 제도로는 ①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② 메디케어(Medicare), ③ 메디케이드(Medicaid), ④ 미국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등이 있음

가. 사회보장법

-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Old Ag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program; OASDI)은 모든 근로자 및 자영업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일정 연령 이후 매월 일정액을 수령하는 공적 노령연금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미국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고령층의 97%가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으며, 4명 중 1명은 국민연금이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음
 - 2022년 1월 기준으로, 미국 거주자 6명 중 1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고령층이 수혜자의 8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함
- 이로 인해 1966년에 30%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2021년에 약 9%로 감소해 노인 빈곤 상황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동 연금제도는 소득층 간·인종 간의 소득 불균형 또한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
 - 사회보장법을 통한 국민연금제도가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 65세 이상 고령층의 40%이 빈곤선 이하의 소득을 갖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²⁾
 - 연금 수령액은 납부하는 소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구조이지만,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이 저소득층의 경우에 가장 높음(〈그림 5〉 참조)
 - 2021년을 기준으로 65세에 은퇴하는 저소득자는 은퇴 전 소득의 약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반면 고소득자는 약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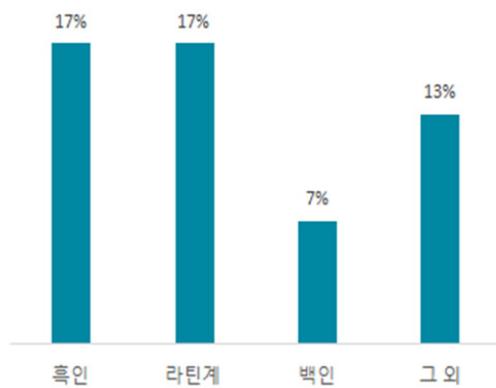
2) CBPP(2022. 3. 4), "Policy Basics: Top Ten Facts about Social Security"

〈그림 5〉 미국의 소득층별 연평균 국민연금 수령액 (단위: 달러)



자료: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1 Trustees Report"

〈그림 6〉 미국의 인종별 고령층 빈곤율



자료: CBPP(2021. 3), "Current Population Survey"

나.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는 노인 및 장애인, 빈곤층의 의료보호를 목적으로 1965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을 통해 생겨남

- 메디케어의 수혜자는 2021년 기준 약 6,400만 명,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약 7,600만 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³⁾
 - 메디케이드의 수혜자는 2010년 3월에 오바마케어라 불리는 의료보험관련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PPACA)이 시행되면서 적용 대상이 600만 명 이상 크게 확대됨
- 메디케어의 경우 수혜자가 노인 및 장애인으로 구성되는데, 노인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메디케어는 노인 및 장애인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공되는, 노년층을 위한 건강보험이며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호 제도로 미국 고령층의 대부분이 이 두 제도를 통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고 있음

-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서 의료 세금(Medicare Tax)을 10년 이상 납부한 경우에 가입할 수 있음
- 메디케이드는 연방 빈곤율(Federal Poverty Level)을 기준으로 연 소득과 소유한 재산의 정도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함

3)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

〈그림 7〉 메디케어 수혜자 증가 추이

(단위: 십만 달러)



자료: 미국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2021 Trustees Report"

다. 미국 노인법(Older Americans Act; OAA)

○ 1965년 제정되어 10차례의 개정을 거친 미국 노인법은 고령화 현상이 시작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다양한 고령화·노인보호 관련 정책들의 기본방향과 틀을 제공하고 있음

- 관련 서비스 및 프로그램으로는 식사 서비스, 가족 간병인 지원, 5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지역 고용을 촉진하는 지역 서비스, 시설의 입주자 학대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
 - 대부분의 관련 프로그램은 연방의 보조금에 주(州)·시 등의 일정 비율의 의무적 지출(match)을 더해 예산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동 법으로 인해 연방·주(州)·시 등에 관련 대책국이 설치되었음

○ 2020년 3월 25일 동 법이 개정되었으며 개정 사항으로는 간병인의 처우 개선, 식사 서비스 프로그램 개선, 조부모 지원법 기한 연장, 2020년 회계연도 세출액 승인 등이 있음(〈표 1〉 참조)

〈표 1〉 2020년 미국 노인법 개정 사항

항목	내용	관련 법률 및 법률 항목
간병인의 처우 개선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 기관 등이 보조금 또는 계약에 의해 실시되는 프로그램 운영 시 간병인을 직접 모집하고 고용을 유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전략을 취할 것을 권고	동 법 제411조 a항(13)
가족 간병인 지원 법률의 기한 연장	만성질환 환자, 장애인 등의 가족 간병인을 위해 ① 가족 중심의 케어 촉진, ② 가족 간병인의 가계 안정 및 직업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전략 작성 등을 실시하는 법률을 1년 연장	RAISE Family Caregivers Act (2018년 1월 22일 제정)
관련 위원회 개칭	‘고령화 위원회’를 ‘건강한 고령화 및 고령자 친화 지역 위원회’로 개칭하고, 동 위원회는 ① 고령자의 자택 거주, ② 장기간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간의 조정 등을 담당	동 법 제203조 c항(1)
지원 대상자 확대	가족 간병인이 돌보는 알츠하이머 또는 다른 신경장애 및 기질성 뇌장애 환자의 경우 고령자본 아니라 모든 연령의 환자가 동 법에 적용됨을 명시	동 법 제711조 6항
식사 제공 서비스 프로그램 개선	주(州)는 지역 고령자 대책국과 협의하여 식사 서비스에 필요한 연방 보조금 이전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상의 장벽을 줄이고 한정된 자원이 해당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	동 법 제321조 a항(8)
제출 양식 추가	주(州)가 노인법 III에 따른 보조금 수급을 위해 매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주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 스크리닝에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건강에 미치는 영향 관련 스크리닝’ 및 ‘외상성 뇌손상 스크리닝’을 추가할 것	동 법 제321조 a항(8)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상한 기준 삭제	주(州)가 실시하는 가족 간병인 지원 프로그램에서 55세 이상의 가족 간병인에 대한 지원은 프로그램 전액의 10%를 넘지 않는다고 되어 있었으나 이 상한을 삭제	동법 제373조 h항(2)
고령자 이송 서비스 확충	비영리 조직이 보조금 또는 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고령자 이송 서비스의 선택사항(대중교통, 자원봉사 등)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이송 스케줄을 짜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	동법 제416조 b항(2)
조부모 지원법 기한 연장	손자를 양육하는 조부모지원법 제3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존속을 1년 연장하고, 동 위원회는 조부모의 정신, 신체 및 감정의 건강 유지를 위하여 입수 가능한 정보의 제공 등을 실시할 것	Supporting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Act (2018년 7월 7일 제정)
2020 회계연도 세출액 승인	2020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2020년 미국 노인법에 따른 21억 달러의 세출과 더불어 코로나 관련법에 따라 고령자법에 관한 서비스에 대해 2,000만 달러의 세출을 승인	-

자료: Colello & Napili(2022. 7. 23), "Older Americans Act: Overview and Funding," *CRS Report*, R43414, pp. 9-12

4. 미국 보험산업의 인구고령화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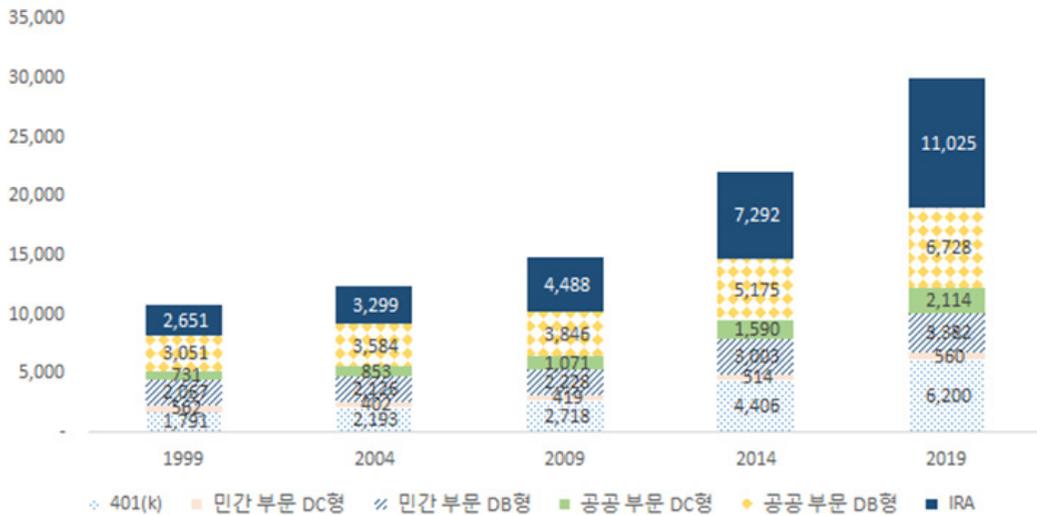
가. 사적 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

○ 미국의 사적연금은 대부분 직업과 관련된 퇴직연금 형태로 가입자에게 직종·직장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약 1억 3,600만 명이 민간 부문의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고,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눌 수 있음(그림 8) 참조)

- DB형 퇴직연금은 현재 대부분의 직장에서 제공하지 않지만, 과거 가입자들로 인해 적립금 규모는 약 3억 4,000달러 정도임
- 401(k)은 대표적인 DC형 퇴직연금으로, 고용주 부담금에 근로자 급여의 일부를 더해 적립되며 적립금 규모는 민간 직장 퇴직연금의 60% 이상을 차지함
 - 동 연금은 과세이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과세이연이 적용되는 적립액 한도는 2022년 기준 연 20,5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27,000달러로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됨
 - 동 연금의 적립금 규모는 2000년 1조 7,390억 달러에서 2019년 기준 약 6조 2,000억 달러로 증가함

〈그림 8〉 퇴직연금 종류별 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민간 부문 DC형은 401(k)가 제외된 데이터임

자료: Investment Company Institute, "The US Retirement Market Fourth Quarter 2019"

○ 미국의 IRA는 우리나라의 개인 퇴직연금(IRP)과 유사한 제도로,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개설할 수 있으며 IRA에 축적된 자산은 약 11조 정도로 추산됨

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Medicare Advantage) 및 메디갭(Medi-gap)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은 모두 민간 보험회사를 통해 판매되고 메디케어와 관련된 상품이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는 메디케어의 대체 상품으로서 기능하고, 메디갭은 메디케어 가입자가 추가 보장을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완 상품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 기본적으로 메디케어의 보장 내용과 더불어 추가 보장 혜택을 받는다는 면에서 유사하나 보장 범위, 본인 부담금 규모, 보험료 등에서 차이를 보임(〈표 2〉 참조)

〈표 2〉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와 메디갭 비교

항목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메디갭
의사·병원 선택	해당 플랜 네트워크에 속한 의사·병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본인 부담금이 더 커질 수 있음	메디케어와 동일
보험료	기존 메디케어로 커버되는 보장 내역을 제외한 부분의 경우 월 평균 보험료 19달러	월 평균 163달러
본인 부담금	최대 7,550달러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거나 전혀 없음
보장 범위	안과, 치과, 처방약품 등을 포함한 추가 혜택 제공	각기 다른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는 여러 플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나 안과 및 치과 치료는 보장되지 않음
전문의와의 만남 편의성	주치의의 진료 의뢰가 필요함	주치의의 진료 의뢰가 불필요함

주: 비용 관련 데이터는 2022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값임

자료: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AARP) 사이트의 자료를 재구성함

다. 장기요양보험(Long-Term Care Insurance; LTC 보험)

- 고령층의 노후에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음
 - 치료 보장을 위한 의료보험의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장기간의 일상적 간병(목욕, 환복 등의 일상 활동 지원)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음
- 그러나 미국의 장기요양보험은 과거 보험가격상정 오류로 손해율이 높아져 2010년대에 해당 상품 판매를 중단한 보험회사가 많았으며, 이후 보험료가 크게 인상되어 많은 사람들이 동 보험상품 구매를 기피하는 성향을 보이기 시작함⁴⁾

4) AARP(2018. 3. 1), "5 Things You Should Know About Long-Term Care Insurance"

- 1990년대에는 100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장기요양보험상품을 판매했으나, 현재는 15개 미만으로 많은 보험회사가 판매를 중단하였음
- 장기요양보험은 가입 시점의 연령에 따른 보험료가 크게 상이하고 연 평균 보험료 또한 2018년 기준 2,700달러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다소 높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
 - 장기요양보험의 연 평균 보험료는 가입 시점의 연령이 64세의 경우 평균 3,400달러, 65세의 경우 평균 3,700달러로 가입 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음
 - 현재 65세 노인의 약 절반이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를 겪고 있으나, 그 중 11%만이 장기요양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⁵⁾
- 2012년 이후 신규 가입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표 3〉 참조)

〈표 3〉 장기요양보험 신규 가입자 전년 대비 증감률 추이

										(단위: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4	1	2	-1	-2	-1	-2	-2	-2	-1	

주: 장기요양보험을 제공하는 상위 10개 보험회사를 데이터 표본으로 하였음

자료: 미국 장기요양보험협회(AALTCI)의 Latest LTC Data(2021. 6)에서 발췌함

-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존 장기요양보험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지급 특약이 포함된 생명보험 또는 연금과 장기요양보험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상품이 대안으로 등장함⁶⁾
 - 동 상품은 2015~2019년 기간 동안 판매량이 75%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 판매된 장기요양보험상품의 84%가 하이브리드 상품이었음
 - 하이브리드 상품은 기존의 장기요양보험에 비해 비용 대비 보장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낮고 가입 자격이 엄격하지 않아 소비자가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음

5) Forbes(2022. 7. 26), "How Hybrid Life Insurance Pays For Long-Term Care"

6) 김동겸(2021. 5. 10), 「미국, 장기요양보험 리스크관리 실패와 시사점」, 『KIRI리포트』,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해외 보험동향 · KOREA INSURANCE INDUSTRY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01-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10호 [2022년 여름호]

발 행 일 2022년 9월
발 행 인 안 철 경
발 행 처 보험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 의 보험연구원 글로벌보험센터(02-3775-9037)
인 쇄 소 경성문화사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